

## 예 산 총 칙(이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1조(총칙)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217,568,720원으로 하며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예산)세입 예산은 이용자부담금수입740,100원,경상보조금수입200,634,080원,이월금16,161,148원,기타예금이자수입33,392원으로 그 내역은 명세와 같다.

제3조(세출예산)세출 예산은 인건비180,567,380원,업무추진비480,000원,사무운영비17,926,700원,시설비1,660,000원,보조금반환308,210원예비비16,626,430원으로 그 내역은 명세와 같다.

제4조(예산의 집행)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정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상 부득이 예산과목간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센터장)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2)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3)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5)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6)세출예산 성립 후 추가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보조금 수입은 명시목적에 따라 우선 집행하며, 사업내용을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며1)항의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다.

7)후원금(목적후원금), 특정 목적사업 예산중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연도이상에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적립할 수 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총괄(이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세입·세출 총괄

세입				세출							
관	항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		관	항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b>총계</b>				226,480,730	217,568,720	△8,912,010	96%	226,480,730	217,568,720	△8,912,010	96%
이용자부담수입	이용자부담수입							189,484,680	180,567,380	△8,917,300	95%
사업수입	사업수입	800,000	740,100	△59,900	93%	사무비	업무추진비	500,000	480,000	△20,000	96%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사무운영비	19,308,800	17,926,700	△1,382,100	93%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09,493,480	200,634,080	△8,859,400	96%	재신조성비	시 설 비	200,000	1,660,000	1,460,000	830%
	자본보조금수입						기능보강사업비				
	기타보조금수입						사업비				
	후원금수입				#DIV/0!		교육비				#DIV/0!
차입금	차입금					전출금	전출금				
전입금	전입금					보조금반환금	보조금반환금	297,869	308,210	10,341	103%
이월금	이월금	16,157,530	16,161,148	3,618	100%	잠지출	이차지불금				#DIV/0!
잠수입	불용품매각대					잠지출	잠지출				#DIV/0!
	기타예금이자수입	29,720	33,392	3,672	112%	예비비	예비비	16,689,381	16,626,430	△62,951	100%
	기타잠수입					예비비 (사업수입)					

## 예 산 총 칙(이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1조(총칙)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79,994,990원으로 하며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제2조(세입예산)세입 예산은 이용자부담금수입 750,000원, 경상보조금수입 222,748,220원, 이월금 53,019,207원, 기타예금이자수입 37,563원, 기타집수입 3,440,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세와 같다.

제3조(세출예산)세출 예산은 인건비 203,402,920원, 업무추진비 1,550,000원, 사무운영비 21,359,300원, 시설비 200,000원, 장애인식개선캠페인사업비 300,000원, 보조금반환 466,570원, 잡지출 140,000원, 예비비 52,576,2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세와 같다.

제4조(예산의 집행)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정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상 부득이 예산과목간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센터장)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2)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3)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법인(센터장)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5)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6)세출예산 성립 후 추가로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보조금 수입은 명시목적에 따라 우선 집행하며, 사업내용을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며)항의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다.

7)후원금(목적후원금), 특정 목적사업 예산중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연도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